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 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8조)

- 우량비료의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선
 - (기존)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
→ (개선) 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온실가스 감축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야별 지정

- 우량비료의 고시 범위 확대

- (기존) 인정기준 → (개선)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기준

○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비료수입업 신청 시 등록신청서 제출 지자체를 명확히(안 제11조 및 제14조)

- 사무실 소재지와 제조장(영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자체에 혼동이 있어 개선
 - (기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개선) 제조장(영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등록기준 위임 근거 마련(안 제12조 및 별표 2)

-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은 종류가 다양하고 세부적이어서 농촌진흥청 고시(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비료의 시설기준)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는 위임 근거 미흡하여 개선
- (기존) 시설과 등록기준은 별표 2로 지정 → (개선) 시설과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등록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 통합 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인 편의 도모
- (기존)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 → (개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관리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권한의 위임사항 조정(안 제19조)

- 안 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의 우량비료 지정제도 보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존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외에 우량비료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임
- 안 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의 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 위임
- 법 제14조 제4항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추가로 위임

○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및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4)

- 법 제30조제2의2호(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미준수) 및 법 제30조제3의3호(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초과)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
-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1회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금액의 50% 이상 설정, 위반 횟수별 가중처벌 등)에 부합되도록 기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를 “**농업환경 · 토양의 보호분야, 농업생산성의 증대 분야 또는 온실가스 감축분야**”로, “**우량비료로 지정 · 고시해야 한다**”를 “**분야별 우량비료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를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같다**”를 “**같으며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인정기준**”을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 설정·고시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6.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제19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8. 10.>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1. 공동시설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검량(檢量)·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추는 것

2. 비료별 생산시설

비료별	시설기준
가. 보통비료	
1) 질소질비료	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2) 인산질비료	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3) 칼리질비료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4) 복합비료	동력배합기(액상비료의 경우 반응장치 또는 용해장치를 말한다) 등 생산시설
5) 석회질비료	동력분쇄기 또는 소성로(燒成爐) 등 생산시설
6) 규산질비료	동력분쇄기 또는 동력채장치 등 생산시설
7) 고토비료(苦土肥料)	반응장치, 건조장치 또는 탈수장치 등 생산시설
8) 미량요소비료	반응장치 또는 동력배합기 등 생산시설
9) 그 밖의 비료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
나. 부산물비료	
1) 부숙유기질비료	발효시설 등 생산시설
2) 유기질비료	동력분쇄기(중제 가죽분의 경우에는 찌는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3) 미생물비료	배양기 등 생산시설
4) 그 밖의 비료	<u>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시설</u>

■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시험연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제1호	<u>300</u>	<u>400</u>	<u>500</u>
나. 시험연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2호	<u>300</u>	<u>400</u>	<u>500</u>
다. 비료생산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	<u>100</u>	<u>150</u>	200
라. 비료생산업자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2	<u>100</u>	<u>150</u>	200
마. 비료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2호	<u>100</u>	<u>150</u>	200
바. 비료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3호	<u>100</u>	<u>150</u>	200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4호	<u>100</u>	<u>150</u>	200
아.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31조제2항	<u>50</u>	<u>75</u>	<u>100</u>

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자.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2호의2	300	400	500
차.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경우	법 제30조제2호의3	300	400	500
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0조제3호			
1)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300	400	500
2)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비료의 창고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00	400	500
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4호			
1)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경우		300	400	500
2) 비료판매업자, 비료의 운송업자, 비료의 창고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00	400	5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u>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해야 한다.</u>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① ----- ----- ----- <u>농업환경·토양의 보호분야, 농업생산성의 증대 분야 또는 온실가스 감축분야</u> ----- ----- ----- <u>분야별 우량비료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u>인정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u>	② ----- ----- <u>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취소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3(배상절차)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제8조의3(배상절차)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u>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

----- 첨부하여 제조
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 -----

----- 같으며 보
통비료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에 대한 시설기준은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

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료생
산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
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

<신 설>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
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
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료수
입업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
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하
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같
다)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① -

-----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② -----

----- . 다만,

서 신설>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
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 . 다만,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
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신 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삭 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 략)

8.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
량비료의 지정·고시 및 우량비
료 인정기준의 설정·고시

<신 설>

9.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
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
임한다.

<신 설>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

인정기준, 지정의 유효기간, 지
정취소 기준 등-----

9.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비료
와 부산물비료 중 그 밖의 비료
에 대한 시설기준 설정·고시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증 표

1. ~ 3. (생략)

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신설>

④ (생략)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시 및 판매 관리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5. -----
-----제3호 및 제4호-----

6.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

	<u>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u>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